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1. 1. 31.] [관세청고시 제2021-18호, 2021. 1. 31., 일부개정]

관세청(수출입안전검사과), 042-481-114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관세법」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관리대상화물"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·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
 - 가. 「관세법」제135조에 따라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검사대상화물 (검색기검사화물, 즉시검사화물, 반입후검사화물 및 수입신고후검사화물) 및 감시대상화물(하선(기)감시화물 및 운송추적감시화물)을 말한다.
 - 나. 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송물품
 - 다. 「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제2조제1호와 제2호의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(이하 "이사물품등"이라 한다.)
 - 라. 「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」제1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1조에 따른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(이하 "유치물품등"이라 한다.)
 - 마.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4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(외국물품만을 말한다. 이하 "보세판매용물품"이라 한다.)
- 2. "검색기"란 X-ray 등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등의 내장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학검색장비를 말한다.
- 3. "검색기검사화물"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을 말한다.
- 4. "즉시검사화물"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검사 를 실시하는 화물을 말한다.
- 5. "반입후검사화물"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하선(기)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에서 이동식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을 말한다.
- 6. "수입신고후검사화물"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중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화물을 말한다.
- 7. "하선(기)감시화물"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하여 부두 또는 계류장 내에서 하역과정을 감시하거나 하역즉시 검사하는 화물(공컨테이너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8. "운송추적감시화물"이란 세관장이 제3조에 따라 선별한 감시대상화물 중 하선(기)장소 또는 장치예정장소까지 추적감시하는 화물을 말한다.
- 9. "세관지정장치장"이란「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」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- 10. "세관지정 보세창고"란 세관장이 관할구역내 영업용보세창고중에서 화물의 감시·단속이 용이한 곳으로 관리대상화물 등을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지정한 보세창고를 말한다.

제2장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 선별

제3조(선별기준)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

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·검사·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.

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환적화물의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적용대상) 세관장은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기류 등 위해물품·마약류·수출입금지품·밀수품과 대외무역법 및 상표법 위반물품 등과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세관장이 밀수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.

제5조(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)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- 1. 총기류·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
- 2.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
- 3.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
- 4.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
-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- 1.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「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 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
- 2. 수(중)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
- 3.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
- 4.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
-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- 1.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
- 2.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
- 3. 하선(기)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
- 4.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
-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- 1.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
- 2.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
- ⑥ 세관장이 하선(기)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- 1.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
- 2. 하선(기) 작업 중 부두(계류장)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
- 3.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(기)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
- 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- 1. 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
- 2.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(기)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
- 3.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

제3장 장치 등

- 제6조(검사대상화물의 하선 (기) 장소) ① 검색기검사화물, 반입후검사화물, 수입신고후검사화물 및 감시대상화물의 하선(기)장소는 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선사(항공사)가지정한 장소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색기검사화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경우에만 하선장소에 반입할 수 있으며, 검사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를 하선장소로 한다.
 - ③ 즉시검사화물의 하선(기)장소는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제15조제4항제1호와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.
 - ④ 세관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하선(기)장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 - 1. 세관지정장치장. 다만, 세관지정장치장이 없거나 검사대상화물이 세관지정장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소
 - 2. 세관지정 보세창고
 - 3. 검사대상화물이 위험물품, 냉동·냉장물품 등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대형화물·다량산물인 경우에는 제 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물을 위한 보관시설이 구비된 장소

- 제7조(특송물품 등의 장치) ① 특송물품·이사물품등·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보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- 1. 특송물품: 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제7조에 따라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
 - 2. 이사물품등 및 유치물품등: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
 - 3. 보세판매용물품: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6조에 따른 보관창고
 - ② 세관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과 세관지정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관리대상화물을 일반화물과 구분하여 장치해야 한다.

제4장 관리절차

- **제8조(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절차)** ① 세관장은 하선(기)장소의 위치와 검색기의 검사화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선별하고, 해당 화물의 선별내역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야 한다.
 - ②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에 대하여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 적재화물목록제출자에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, 하선(기)장소, 검색기 검사장소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인 검사대상화물 반입지시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.
 - ③ 세관장은 감시대상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색기검사화물 또는 반입후 검사화물로 변경하여 검사할 수 있다, 이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 - 1. 적재화물목록제출자
 - 2. 보세운송신고인
 - 3. 보세구역운영인(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)
 - 4. 화물관리인
 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반입후검사화물 또는 운송추적감시화물의 경우 검사대상 선별사실을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통보할 수 있다.
- 제9조(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검사 및 조치) ① 세관장은 검색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화물이 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 재에 관한 고시」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하선장소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.
 - ② 세관장은 검색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화물과 즉시검사화물에 대하여 제6조제 4항에 따라 지정한 하선(기) 장소에서 개장검사를 실시한다.
 -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
 - 1. 검색기검사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즉시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
 - 2.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한 화물을 검색기 고장 등의 사유로 즉시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
 - 3. 화주의 요청으로 검색기검사화물을 즉시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
 - 4. 하선(기)감시화물에 대하여 운송추적감시 또는 검사대상화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5. 즉시검사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위험물, 냉동·냉장물 등 특수보관을 요하는 물품이거나 대형화물 또는 다량산물 등의 사유로 해당 화물을 위한 보관시설 등이 구비된 장소에서 개장검사를 하기 위해 반입후검사화물로 변경하는 경우
- ④ 세관장은 반입후검사화물에 대하여 검색기를 이용한 검사 또는 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세관장은 선별한 운송추적감시화물 또는 반입후검사화물이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보세운송신고 되거나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보세운송검사대상 또는 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해야 한다.
- ⑥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에 대하여 검사 또는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, 이상화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, 고발의뢰 등 적절한 조 치를 해야 한다. 다만,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제10조(합동검사반 구성 및 운영)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및 신속한 밀수단속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물, 감시, 통관, 조사 등 각 업무분야의 전문가로 합동검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합동검사반이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밀수정보가 있는 화물
 - 2.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합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
 - 3. 그 밖에 세관장이 합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
 - ③ 세관장은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약탐지견 또는 과학검색장비를 적절히 활용하여 검사해야 한다.
- 제11조(특송물품 등의 검사 및 조치) ① 특송물품·이사물품등·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의 검사절차·검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- 1. 특송물품은 「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2. 이사물품등은 「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3. 유치물품등은 「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4. 보세판매용물품은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-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2조(검사 입회 및 서류 제출) ① 세관장은 개장검사를 실시할 때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들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들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·검사장소·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.
 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입회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(운영인)이나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세관장은 제9조에 따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송품장
- 2. 선하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
- 3. 상세포장명세서 등 기타 검사관련 서류

제5장 검사대상화물의 해제 등

- 제13조(검사대상화물의 해제) ①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3조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서류는 우편, FAX,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.
 - 1. 원자재(수출, 내수용 포함) 및 시설재인 경우
 - 2. 보세공장, 보세건설장, 보세전시장,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
 - 3.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
 - 4.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고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된 것을 해제해야 한다.
 -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.
 - 1. 등록사유(검사착안사항)와 관련 없는 물품
 - 2.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1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(수입업체)가 수입하는 물품
 - 3. 국가(지방자치단체)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
 - 4.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·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
 - 5.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화물
 - ④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재화물목록 정정,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- ⑤ 세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.
- 제14조(보세운송) ① 검사대상화물·특송물품 및 이사물품등의 보세운송 절차는 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제2조제4호에 따른 즉시검사화물의 보세운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 - 1. 진공포장 화물 등 특수한 장소에서만 개장이 불가피하여 해당 장소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
 - 2. 「검역법」·「식물방역법」·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·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·「화학물질관리법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하는 경우
 - 3. 화주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검사대상화물 검사시 입회가 어려운 경우로서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5. 검사결과 적재화물목록 정정·보수작업 대상 등 범칙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보세화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유치물품등의 보세운송 절차는 「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③ 보세판매용물품의 보세운송 절차는 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15조(출입 통제) 세관장은 검색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.
- 제16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「행정규제기본법」및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(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1-18호,2021.1.31.>

이 고시는 202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